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영주소방서 자체감사 —

2022. 10.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7건	3	4	2	3,667	0	0	0	0
1	영 주 소 방 서	소방구급장비 분할구입 부적정		1						
2	영 주 소 방 서	연가보상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1		1	2,731				
3	영 주 소 방 서	소방법 위반 소방대상물 행정처분 부적정		1						
4	영 주 소 방 서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1						
5	영 주 소 방 서	의용소방대 재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1	936				
6	영 주 소 방 서	과태료 체납관리 부적정	1							
7	영 주 소 방 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소방구급장비 분할구입 부적정 (주의)	1
2. 연가보상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 주적정 (시정)	3
3. 소방법 위반 소방대상물 행정처분 부적정(주의)	6
4.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주의)	8
5.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시정)	11
6. 과태료 체납관리 부적정 (시정)	14
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6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구급장비 분할구입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BBB과
내 용	

영주소방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각종 구조·구급장비 및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의 용역·물품·기타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에 따르면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물품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구급소모품을 구입하면서 □□□□

□ 등 2건(34,268천원)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일반경쟁이나 수의견적 제출 공고를 통해 계약해야 되는 물품을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표] 구조장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구 입 명	예산과목	품의일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업체(업종)	비 고
합 계				34,268		
□□□□□ 구급소모품 구매 계약	긴급대응능력확보 재료비	2020.3.20	2020.3.20	20,000	○○○ (의료기기)	동 일 예산과목
구급소모품 구매 계약	긴급대응능력확보 재료비	2020.3.20	2020.3.20	14,268	□□□ (의료기기)	

그 결과 일반경쟁이나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을 통하여 공고를 할 경우 입찰 및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상실되게 되었고,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주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리 발주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보상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영주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및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징계(정직)처분자 연가보상비 등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르면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7장에 따르면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서 연가일수의 공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정에 따르면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정직처분자에게는 정직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사용한 연가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봉급일액을 감지급함이 타당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위 J에게 연가 보상비를 산정·지급하면서 징계처분 일수만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 694,330원을 지급하였고,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국으로 처리하여야하는 보수 1,844,67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1] 징계처분자 연가보상비 등 지급 현황

(단위 : 원)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연가일수	정직처분전 연가사용일수	징계처분 공제기간	잔 여 연가일수	결근처리일수 (연가로처리 된 일수)	연가보상비 반납금액	결근처리에 따른 보수 반납금액	반납금액 합 계
	J	22일	1.25일	1개월	-	14일	694,330원	1,844,670원	2,539,000원

* 보수반납금액 : 총액 1,844,670원

- 보수 : 소방위(21호봉) 3,459,700원*(14/31) = 1,562,440원

- 수당 : 방호활동비 170,000원*(14/31) = 76,770원, 구조구급수당 100,000원*(14/31) = 45,160원
위험근무수당 80,000원*(14/31) = 36,12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14/31) = 58,700원
지급보조비 145,000원*(14/31) = 65,480원

2.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특수 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방호활동비는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월액으로 170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¹⁾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지급에 대해 파견,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교육,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K 등 2명에게 방호활동비 191,68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1) 2021.1.1. 폐지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표2]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직급	성명	부적정지급내역 (방호활동비)	1개월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내역
	K	136,010	2017.11.6.~2018.7.1.(휴직)
	M	55,670	2022.6.20.~2022.7.22.(교육)

조치할 사항 영주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연가보상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2,730,68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법 위반 소방대상물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DDD과
내 용	

영주소방서 DDD과에서는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소방계획서의 이행,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특별조사(이하“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7. 5. 8.부터 2021. 6. 21.까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등 6개 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조치 명령만 하는 등 부당하게 행정처분 하였다.

[표] 위반업소 행정명령 현황

(단위 : 천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일자	위반 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적정처분
○○○	내용	생략	2017.5.8	4층 완강기 미설치 등	2017.5.12	시정조치	과태료 대상 (3,000)
○○○	내용	생략	2017.5.11	3층 로타리클럽 사무실 및 당구장 완강기 미설치, 감지기 미작동 등	2017.5.12	시정조치	과태료 대상 (3,000)
○○○	내용	생략	2018.3.19	3~4층 간이완강기 8개 미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 등	2018.3.20	시정조치	과태료 대상 (3,000)
○○○	내용	생략	2018.3.27	3층 완강기 미설치	2018.3.28	시정조치	과태료 대상 (3,000)
○○○	내용	생략	2019.2.21	방화셔터 미작동(고장방치), 출입구 피난 유도등 미점등	2019.2.21	시정조치	과태료 대상 (1,000)
○○○	내용	생략	2021.6.21	3층 완강기 미설치, 각 실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비치 등	2021.6.21	시정조치	과태료 대상 (3,000)

그 결과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주소방서장은

앞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소 관 청	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영주소방서 AAA과에서는 2018년에 “KKK 설치공사”와 2019년에 “MMM 사무실 설치공사” 그리고 2020년에 “NNN 직원대기실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1.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5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업종에 맞게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 계약은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건 공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요

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실내건축공사업(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부적정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1]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업체명	계약일	예정금액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등록필요 업종
KKK 설치공사	PPP2)	2018.12.11.	15,950	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MMM 사무실 설치공사	PPP	2019.1.15	16,530	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료 : 영주소방서 자료제출 재구성

그 결과 정당한 건설업자는 수주 기회를 일탈하게 되었고, 위 2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시공 되었다.

2.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³⁾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전용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에 따르면 건물, 기계, 기구,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는 시설비(401-01)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건물의 수선, 개보수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2)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조립식주택, 인테리어, 수도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영주소방서 확인 및 제출자료)

3)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4)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단체장) → 관계부서 통지(예산부서)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3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 성격의 사업예산으로 임의 전용하여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표2]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된 시설비 성격의 사업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적 요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과목	적정과목
1	MMM 설치공사	2018.12.21	14,350	공공운영비 (201-02)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401-01)
2	KKK 사무실 설치공사	2019.1.31	14,877		
3	NNN 직원대기실 설치공사	2020.6.22	9,028		

자료 : 영주소방서 자료제출 재구성

그 결과 세출예산이 목적외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주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EEE과
내 용	

영주소방서 EEE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관리하고 있다.

1.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재선발에 따른 장학금 지급 부적정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시 각 1회에 한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발한 DDD의용소방대 A의 자녀 AA를 2022년도에도 장학생으로 다시 선발하여 장학금 936,000원을 지급하였다.

[표1]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중복 지급자 내역

(단위 : 원)

지급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지급액	비 고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명	학교명	학 년		
2022년	DDD여성의용소방대	○○○	B	AA	□□□	3	936,000	의용소방대원은 부부 관계
2017년	DDD남성의용소방대	○○○	A	AA	□□□	1	1,000,000	

자료 : 영주소방서 자료제출 재구성

2. 해임대상 의용소방대원 미해임에 따른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에 따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의 경우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연 12시간 이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지급정지) 및 ‘2022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 자격 요건으로 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이 있는 대원의 자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2020년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연 12시간 이상의 기준에 미달하여 해임 대상인 전담의용소방대원 E의 자녀 EE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 장학금 907,500원을 지급하였다.

[표2] 전담의용소방대 해임대상자 교육·훈련 이수 현황

의용소방대원			교육실적				장학금 지급		
소속	직위	성명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급일	대상	금액
SS전담의용소방대	○○○	E	12시간	6시간	14시간	2020년 해임사유 발생	2022.4.19.	EE	907,500원

조치할 사항 영주소방서장은

- ① DDD남성의용소방대원 A의 자녀 AA에게 지급된 2022년 장학금 936,000원은 회수하시고,(시정)
- ② 앞으로 장학금 선발 기준 및 의용소방대원 해임 기준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과태료 체납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CCC과
내 용	

영주소방서 CCC과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재산⁵⁾을 압류하여야 하며, 60개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남정선 등 3명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 등 독촉장만 발송하고, 압류를 위한 재산 확인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성 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위반사항
		계	과태료	가산금	증가산금	
계	3건	1,562	1,300	39	223	
○○○	2020. 10. 5.	1,222	1,000	30	19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태만
○○○	2021. 1. 11.	122	100	3	19	화재배상책임보험 6일 미가입
○○○	2021. 10. 27.	218	200	6	12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미실시

그 결과 과태료 총 1,562천원이 징수되지 아니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소방서장은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해 최후 독촉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5) 국세징수법 제3장에 따르면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영주소방서 AAA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체육대회 참가 격려금 및 직원의 사기진작 격려품 구입 등을 위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타법폐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품이나 명절 선물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품

및 명절 선물 등 30건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영주소방서장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